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목 차>

1. 교지 및 시설물의 임차기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교육부	작 성 자	이름	강현
	담당부서 (과)	교육국제화담당관		직급	서기관
	국장	하유경		연락처	044-203-6769
	과장	신미경		이메일	kangh@mail.go.kr

2024. 07. 19.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교지 및 시설물의 임차기간											
	2.규제조문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의 재산 임차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3.위임법령	시도교육청별 교육규칙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7.29~2024.09.0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국조실로부터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안정적인 설립·운영을 위해 교지·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공익법인의 재산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안 제4조제2항) 추진 (필요성) 외국인학교-해당 기관 간 단기 임차 체결이 가능할 경우,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의 문제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바,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차할 경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7.규제내용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소유의 재산을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임차기간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학교(38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외국인학교</td><td>전국 38교</td></tr><tr><td>이해관계자</td><td>외국인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입학 희망 학생 및 학부모</td><td>불특정 다수</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외국인학교	전국 38교	이해관계자	외국인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입학 희망 학생 및 학부모	불특정 다수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외국인학교	전국 38교											
이해관계자	외국인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입학 희망 학생 및 학부모	불특정 다수											
9.규제목표	외국인학교가 교지 또는 시설물에 대한 임차계약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보장하여 학생의 학습권 등 확보 가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설립기준)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의 재산 임차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교지 및 시설물의 임차범위 확대(규제완화)를 위한 개정령안을 마련함

※ '초·중·고 규제 개선 방안(총리실, '23)' : <과제명>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제 완화

- 다만, 임차 허용범위를 위와 같이 확대할 경우, 외국인학교가 해당 기관과의 단기임차 계약에 따른 만료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교육규칙으로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외국인학교 교지 또는 시설물 임차범위 완화 및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교육규칙으로 설정
	내용	교지 또는 시설물 임차 시 최소 계약기간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외국인학교 교지 또는 시설물 임차범위만 완화
	내용	외국인학교에서 임차 계약기간 자유설정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학교 운영 안정성 확보 · 안정적인 학생모집 가능	· 외국인학교 임차기간 자율성 축소
규제대안2	· 외국인학교의 자율성 강화	· 단기 임차계약 체결 만료 시, 학교 운영에 중대한 문제 발생 · 학생 모집 불확실성 증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행정예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예정('24.8.)

3. 규제목표

- 학교의 교지 또는 시설의 임차권에 대한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여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도모할 수 있음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교지 또는 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를 확대(완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 외국인학교의 수혜자는 학교의 수업을 받는 외국인학교의 학생인바, 학교 설립·운영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생의 학습권이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 따라서, 임차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학교의 교육 기회를 확대 하되, 임차기간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임이 타당함
- 해당 규제는 외국인학교의 임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규제사항에 해당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르면,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경영자의 소유이어야 하나, (중략) 건물·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것으로 본다.' 라고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3-2호)에서 해당 기간*을 정하였음

* 교사 및 교지의 임대 허용(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10년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학교 설립·운영의 특성상,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교지 등을 임차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학교가 최소 10년 이상으로 임차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규제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임차 계약은 외국인학교에서 체결하며, 시도교육청에서 기존 업무인 외국인학교 설립·변경 승인 처리 시 함께 추진되므로 행정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사항이 아님
- 또한 이는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바, 행정적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 규제는 재정에 관한 사항과 무관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총리실의 「초·중·고 규제 개선방안」('23)에 따라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제 완화 과제 추진('24.2.)
 - ※ 외국인학교의 교사·시설물 임차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23.12.)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따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개정 추진('24.5.)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마련('24.7., 부총리 내부결재)
- 행정예고 및 부처 의견조회 추진('24.7.~, 예정)

2. 종합결론

- (필요성) 외국인학교 교지 또는 시설물의 임차 허용 범위 확대 시, 단기임차 계약에 따른 만료 등으로 학교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규제가 필요함
- (적정성) 외국인학교의 교지 또는 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 확대에 있어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
- (실효성) 현재 교지 등을 임차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학교가 최소 10년 이상으로 임차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피규제자들에게 실질적인 규제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학교 설립·변경 승인 사항은 기존 행정업무 사항인 점, 재정적 소요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집행 및 재정집행에 대한 문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외국인학교 교지 또는 시설물 임차범위 완화 및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교육규칙으로 설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외국인학교 교지 또는 시설물 임차범위 완화 및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교육규칙으로 설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해당 없음
활동제목	해당 없음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해당 없음(해당 없음)
근거설명	해당 없음

☐ 직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해당 없음
활동제목	해당 없음
편익항목	해당 없음
편익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해당 없음(해당 없음)
근거설명	해당 없음

☐ 간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해당 없음
활동제목	해당 없음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해당 없음(해당 없음)
근거설명	해당 없음

☐ 간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해당 없음
활동제목	해당 없음
편의항목	해당 없음
편의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해당 없음(해당 없음)
근거설명	해당 없음

②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정량)영향집단명	해당 없음
활동제목	해당 없음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해당 없음(해당 없음)
근거설명	해당 없음

☐ 편의

(정량)영향집단명	해당 없음
활동제목	해당 없음
편의항목	해당 없음
편의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해당 없음(해당 없음)
근거설명	해당 없음

③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비용

(정량)영향집단명	해당 없음
활동제목	해당 없음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해당 없음(해당 없음)
근거설명	해당 없음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해당 없음
활동제 목	해당 없음
편익항목	해당 없음
편익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해당 없음(해당 없음)
근거설명	해당 없음

④정부 :

☐ 비용

(정량)영향집단명	해당 없음
활동제 목	해당 없음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해당 없음(해당 없음)
근거설명	해당 없음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해당 없음
활동제 목	해당 없음
편익항목	해당 없음
편익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해당 없음(해당 없음)
근거설명	해당 없음

⑤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정량)영향집단명	해당 없음
활동제목	해당 없음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해당 없음(해당 없음)
근거설명	해당 없음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해당 없음
활동제목	해당 없음
편익항목	해당 없음
편익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해당 없음(해당 없음)
근거설명	해당 없음